

결정서

사건 : 2012-366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성명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12. 9. 10.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3. 1.부터 [REDACTED]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0년도에 두 차례의 징계를 받았고 2010학년도 2학기 법정 수업 시수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교원으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2. 8.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기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그 징계사유가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 수업 시수 부족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가. 청구인은 2010. 2. 25. 감봉1월 처분, 2010. 11. 18.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인 징계처벌을 받은 바 있고,

나. 대학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금횡령, 학생폭행, 학생들의 성적처리 부당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학생들의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다.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 교단에 교육자로 서기 곤란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들어 「고등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법정 수업 시수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마. 이와 같이 교육자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성실하지 못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경과

1) 2012. 5월 행정조사 결과 대학측은 청구인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유로 면직처분을 요구하고, 법정 수업시수 부족사유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2010년에 징계를 받은 사실과 그 원인들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차 징계를 하는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12. 7. 17. 청구인에 대하여, ①두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②공금 횡령·학생 폭행·부당한 성적처리로 인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야기된 사실, ③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④법정 수업 시수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의 네 가지 면직 사유를 들어 면직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④는 당초 면직처분 요구시 없었던 항목이 새로운 면직사유로 추가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성



1) 위 ①~③의 면직사유는 기존에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거나 그 징계처분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면직 사유 ④법정 수업 시수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만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면직사유가 된다 할 것인데, 면직사유 ④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것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0학년도 2학기에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등의 조사를 받음에 따라 정상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 미리 학과장, 부처장, 총장에게 시수부족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었으므로 이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될 수 없어 면직사유가 될 수 없다.

2)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총장의 결재를 미리 얻어 책임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된 것을 두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교원에게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성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교원이 그 동안 어떠한 자세로 근무를 하여 왔는지 등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 청구인이 30년 넘게 근속하여 표창장을 받은 사실, 과거 감봉 수준의 경징계만을 받은 사실, 법정 수업 시수 부족이 근무성적과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점, 학생들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판 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2. 3. 1. █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3. 1. 동 대학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0. 2. 10. ‘청구인의 공금횡령, 학생폭행, 성적처리 부당 의혹’ 관련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성화교육사업비를 교부받기 위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0. 11. 18. 감봉3월 처분을 하였다.

4) █ 대학교는 2012. 5. 14. 청구인에게 ‘행정조사 결과 처분(직권면직)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통보를 하였다.

5) 청구인은 2012. 5. 30. 행정조사 결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 대학교는 2012. 6월 이를 기각하였다.

6)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2012. 7. 9.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심의 회부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2. 7. 13. 청구인에 대한 면직동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12. 7. 17. 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 징계위원회는 2012. 7. 30. 청구인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8)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2. 8. 13. 청구인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13. 청구인에게 면직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청구인 정관

제36조(임면)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와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피청구인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

① “(구)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 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②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불량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경우에 있어서 별다른 사유 없이 단기간 내에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감봉6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류중인 사실만으로써 이 사유가 곧바로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02판결 참조).”

③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며,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계속적인 최하위 등급평정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직권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2) 위 규정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제2호의 면직사유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의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사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점, 소속 학과 학생들의 민원을 야기한 점, 벌금형(500만원)을 받은 점, 법정 수업 시수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 들고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결과를 제시한 바는 없다.

4) 한편,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네 가지 사유가 청구인이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2010년도에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고 첫 번째 징계



처분은 ‘공금횡령 · 학생폭행 · 부당한 성적처리’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2010. 2. 25. 감봉1월 처분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 징계처분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500만원)이 확정되어 2010. 11. 18. 감봉3월 처분을 받은 것임을 보면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모범적이지는 않았던 자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금번 면직처분을 받으면서 함께 받은 경고처분의 경우에는 법정 수업 시수를 미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사유이고, 이는 청구인이 2010년 2학기 당시 위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정 수업 시수 12시간 중 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0년 당시 학과장 등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했던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0년도에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당시 법정 수업 시수를 미준수하였던 사실 외에 피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결과를 제시한 바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 문제를 야기하였다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등 청구인이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 결과에 비추어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직권면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요건이 충



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2.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원장 임승빈

위 원 김기남

위 원 김재호

위 원 김영숙

위 원 이정호 (불참)

위 원 양소영

위 원 류연수

위 원 이종근



위 정본임.

2012. 1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